

1. 개정이유

현행 3종인 국토교통 연구개발 관련 하위 규정을 1건으로 통합·개편하여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가연구개발 기본 법률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규정과 행정행위 주체, 용어 등 일치시키며,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쟁형 연구방식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항제10호)
-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기부고시)」에서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 계상 50% 범위 제한을 삭제함에 따라 한도 삭제(제29조의2제3항)
- 다. “경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중단 사유 추가(제36조제4항)
- 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승인권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전문기관은 이를 대행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제37조 제1항)
- 마.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산정 기준을 정확히 명시(제43조)
- 바.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폐지(부칙)
- 사. 관련 규정의 용어 변경에 따라 ‘참여연구원’을 ‘참여연구자’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전문연구사업자’로 변경(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훈령 제1708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이 법령”을 “이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을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 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경쟁형 연구방식**”이란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고 그 경쟁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수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차등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제10호 중 “**기술이전**”을 “**기술 이전**”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개발기관 현장점검, 단계·최종평가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제9조제1항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4항 본문 중 “종료시”를 “종료 시”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본문 중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 전단 중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을 각각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을 각각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제7조 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0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이전”을 “체결 이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사유없”을 각각 “사유 없”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3호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제29조 제1항”을 “제29조제1항”으로, “당사자는 혁신”을 “당사자는 혁신”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경우”를 “경우 단계평가를 위해”로, “전까지, 연구개발”을 “전까지, 연구개발”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전단 중 “점검 할”을 “점검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명단 및 제4항에 따른”을 “명단, 제4항에 따른 평가등급,”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제2항”을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극히 불량 등급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
2.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경쟁형 연구방식으로 공고된 과제가 연구 수행의 지속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37조제1항 전단 중 “전문기관의 장”을 “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승인권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를 “승인은 장관을 대행하여 전

문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7조의2제5항 중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제재처분 평가단 및 제재부가금 수납”을 “제재처분평가단 및 제재부가금 수납”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제재처분 평가단)”을 “(제재처분평가단)”으로 한다.

제43조 전단 중 “10일”을 “10일(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로 한다.

제46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장관”으로, “매3년째”를 “매 3년째”로 한다.

별표 2 라목 중 “혁신법 제18조 제1항”을 “혁신법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바목 중 “건설신기술 또는”을 “건설신기술,”로, “교통신기술”을 “교통신기술,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중 1개 이상”으로, “(보호기간)”을 “(보호기간(지정기간))”으로 하며, 같은 란 라목 중 “사유없”을 “사유 없”으로 한다.

별표 3 가목 중 “참여연구원”을 “참여연구자”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연구원의 인건비”를 “참여연구자”로 하며, 같은 란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 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별표 3의 기호(-) 중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http://www.rndservice.or.kr>)”를 “한국연구산업협회(<http://www.rndia.or.kr>)”로 하고, 같은 란 항목 중 “연구원의 인건비”를 “참여연구자”로 하며, 같은 란 항목 중 “받은 기관”을 “받은 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폐지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u>법령</u>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p> <p>2. ~ 8. (생략)</p> <p>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u>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u>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p> <p><신 설></p>	<p>제2조(정의) ① ----- -----.</p> <p>1. ----- ----- --<u>이 법령</u>----- ----- ----- --.</p> <p>2. ~ 8. (현행과 같음)</p> <p>9. ----- ----- ----- ----- ----- ----- ----- ----- ----- ----- ----- ----- <u>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u>----- -----.</p> <p>10. <u>“경쟁형 연구방식”</u>이란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고 그 경쟁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수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구개발비를</p>

	<p><u>차등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말한다.</u></p>
<p>② (생략)</p> <p>제3조(연구개발사업의 범위)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1. ~ 9. (생략)</p> <p>10. 연구개발성과의 <u>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지원</u></p> <p>11.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연구개발사업의 범위)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 <u>기술이전</u> ----- -----</p> <p>11. (현행과 같음)</p>
<p>제4조(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등) ① (생략)</p> <p>②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이하 “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u>을 간사로 둔다.</p>	<p>제4조(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미래전략담당관</u>-----.</p>
<p>제6조(총괄담당관) ① (생략)</p> <p>② 총괄담당관은 소관 분야별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4. (생략)</p> <p>5. 「<u>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u></p>	<p>제6조(총괄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u></p>

따른 건설신기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신청 및 지정 등 기술인증 획득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 성과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6조(기술수요조사)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 내부 기술수요조사는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이 실시하고 국토교통부 외부 기술수요조사는 기획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7조(사전검토) ① ~ ③ (생략)

④ 총괄담당관은 정책방향, 정부예산 지원 필요성, 연구개발 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 대상사업을 통합, 분리하거나 명칭,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총괄담당관은 그 결과를 정리하여 기획하고자 하는 기획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

제16조(기술수요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미래전략담당관-----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전검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정하여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위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8조(기획연구선정위원회) ①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획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제출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획연구 수요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전기획 또는 기획연구(이하 “기획연구등”이라 한다) 과제 선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기획연구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기획연구등의 추진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의 기관이 경쟁의 방식으로 기획연구등을 추진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9조(기획연구등 선정의 특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계장관회의 등 상급위원회 심의나 장관 방침 등으로 추진 타당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은 경우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과 협의하

미래전략담당관

제18조(기획연구선정위원회) ①

미래전략담당관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기획연구등 선정의 특례)

미래전략담당관

여 제16조와 제17조의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우선 기획연구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 제1항의 기획연구선정위원회 심의는 사후보고로 대체한다.

제20조(기획연구등의 수행) ① 기획사업담당관은 기획연구선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대형사업의 사전기획을 추진한 결과 기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에게 기획연구 수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21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사업담당관이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에게 수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요를 제출받은 경우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

-----.

제20조(기획연구등의 수행) ① --

미래전략담당관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 미래전략담당관-----
-----.

② -----
-- 미래전략담당관-----

한다. 이 경우 심사방법 등은 「투자심사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2조(예산편성) ① 총괄담당관은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에게 차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은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예산규모, 연구개발기간 및 명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 ① ~ ③ (생략)
-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제7조 제2항에 따른 사업담당관이 간사로 참여한다.

⑤·⑥ (생략)

제27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① ~ ⑦ (생략)

⑧·⑨ 삭제

----. -----

--.

제22조(예산편성) ① -----

----- 미래전략담당관-----

-----.

② -----
---- 미래전략담당관-----

-----.

제26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

----- 제7조제2항-----
-----.

⑤·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⑩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⑪ ~ ⑭ (생략)

제29조(협약의 체결 등) ① ~ ⑧ (생략)

⑨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이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된 경우 과제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생략)

3.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제1항에 의한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4.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평가때 제시한 중요한 연구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⑩ -----
----- 각호 -----

-----.

⑪ ~ ⑭ (현행과 같음)

제29조(협약의 체결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체결 -----
이전 -----

1. -----
거짓으-----

2. (현행과 같음)

3. -----
-- 사유 없-----

4. -----
-- 사유 없-----

제29조의2(연구개발비 지급 및 계
상 등) ① 장관은 혁신법시행
령 별표 1 비고 본문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추어 공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 3. (생략)

② (생략)

③ 영리기관의 장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
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50퍼센트를 초과
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기획, 동향조사 등을 목적으
로 추진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2. 중소기업이 지식서비스 분야
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

제29조의2(연구개발비 지급 및 계
상 등) ① -----

----- . 단 제3
호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통보하
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것으로 본다.

② 삭 제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
라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약 내
용을 변경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생 략)

②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
임자는 연구개발과제가 여러 단
계로 구분되어 수행되는 경우
단계보고서를 단계 종료 45일
전까지, 연구개발을 마친 때에
는 최종보고서를 협약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
항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
로 본다.

③ ~ ⑥ (생 략)

제34조의2(중간점검) ① 전문기관
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구개발과제의 진도 등을 점검

-----.

③ ----- 따
른 -----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우
단계평가를 위해 -----
전까지, 연구개발-----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중간점검) ① -----

----- 점검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중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 혁신법 제15조제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생략)

② 삭제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5조제1항·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⑥·⑦ 삭제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알릴 경우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

할 -----.

-----.

② -----
----- 각호-----

-----.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③ -----
----- 각호-----

-----.

④·⑤ (현행과 같음)

⑧ -----

----- 명단, 제4항에 따른 평가등급, -----

은 제외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⑨ (생략)

제36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생략)

② 삭제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신설>

<신설>

---. -----

-----.

⑨ (현행과 같음)

제36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③ ----- 제35조제1항

-----.

1. ~ 3. (현행과 같음)

④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

2.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경쟁형 연구방식으로 공고된 과

제43조(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제3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1. 가점 부여항목
바. 최근 2년 이내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

제43조(이의신청) -----

----- 10
일(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

제46조(재검토기한) 장관-----

-----매 3년째-----

----.

[별표 2] 1. (현행과 같음)
바. -----

신기술,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
통신기술을 신규로 받은 중소
· 중견기업이 연구개발과제
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
점수의 1% 가점 부여 보호기
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3] 1.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
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과 같다.

가.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
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
구원(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
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
다)

다. 중소기업이 지식서비스 분야
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
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연
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물류정책기본
법」 제57조에 따른 우수 물류신
기술, 「조달사업에 관한 법
률」 제2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중 1개
이상을 -----

-----(보호기간(지
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
한다)

[별표 3] 1. (현행과 같음)

가. -----
----- 참여연
구자 -----

----- 참여
연구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